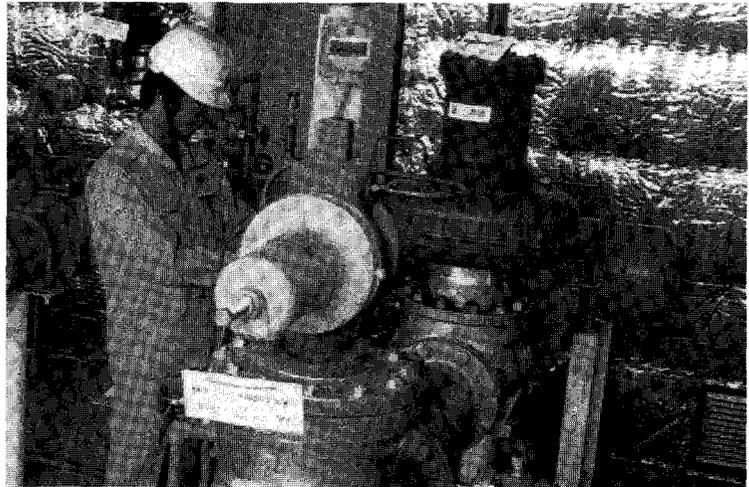




가스시공업체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 시정조치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가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 요구·과다서류 제출 요구·검사 입회 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제도화,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개선,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 대상 완화,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 도시가스 저압배관 사용 등 가스시공업체의 경영에 따른 현안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

▶ **현행 문제점**

가스시설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사용자 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도급 받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에 필요한 제품 또는 자재를(발주자가 지급하는 제품 및 자재 제외)시공자 임의로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도시가스사업자는 전용(단독)정압기, 가스메타기, 가스보일러, 밸브류 및 라인마크 등의 주요 자재를 가스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정업체 제품을 강매하는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스시공업체 설문조사결과 58%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강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

이와 관련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특정제품에 대한 강매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중에서 구입시의 결제조건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현금결제 강요가 86%, 시중가격보다 높은 구매가 68%으로 나타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선방안**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부당행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기술검토·과다서류 제출요구·검사입회요구에 따른 부당행위 방지

▶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 계획의 승인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신청 등)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토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에 의하여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에 의하여 제출서류 및 도면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 기술검토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여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현행 문제점**

가스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사용자 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도급 받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업체에게 법령에도 없는 기술검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검토를 필하도록 월권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사업자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가스시공업체가 도시가스시설 공사시에는 기술검토,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시공감리, 완성검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에게 법령으로 규정된 서류 이외에 임의과다 서류제출을 강요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인력소요 및 공기지연 등 시공원가 상승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스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



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규정에 없는 안전을 빙자,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공지연 및 가스공급지연 등으로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시공자의 자체검사 등)에 의하여 자체검사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토록 되어 있던 조항을 지난 1998년 12월 10일부로 개정하여 공사의 시공감리대상 및 완성검사대상은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 참여(입회)없이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중복 검사를 받는 부담을 개선하였으며 1999년 7월 1일부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시공자 스스로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령을 폐지하였다.

▶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당행위 방지에 대한 공문시행과 실사를 통하여 개선하고, 또한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가 이루어질 때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벌칙제도를 신설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도시가스배관 공동이용제를 도입하여 가스공급시장의 독점화를 지양하고 개방화로 전환하여 소비자 임의로 도시가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도시가스표준시방서(사용자 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제도화

▶ 현행 문제점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과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또는 도시가스분야 검사업무지침 종합 등에 의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도시가스배관 관련분야 표준시방서(KGS-97-049)를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가스시설공사가 통일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각기 다른 시방서를 따르도록 강요하여 가스시공업계의 큰 불편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용자 공급관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소요되는 투자비는 건축물의 소유주 재산인데도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자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각기 다른 자체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하므로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선방안

전국 어느 장소에서나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가스공사가 시공되어야 함에도 각기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시방에 따르도록 강요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므로 정부에서 위탁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정한 도시가스배관 관련분야 표준시방서(KGS-97-049)를 활성화하여 표준이 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처리와 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표준화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시설공사계획의 신고제도 폐지

▶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13호 서식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14호 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대책**

도시가스시설공사에 있어 압력이 높은 중압 이상의 배관공사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압력이 낮은 저압 배관까지 신고토록 함은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법령으로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1층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은 대중이 모이는 건축물(장소)또는 공장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시설 완성검사를 득하고 그 시설의 현황을 안전공사에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므로서 종결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

도시가스저압배관에 대한 신고제도는 안전관리 업무와는 도움이 없으며, 오히려 신고를 필하도록 규제 하므로서 불필요한 인력낭비, 시공지연, 행정력 낭비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은 소비자(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폐지하고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행정관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공사비부담 개선

▶ **관련규정**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정할 것.
2. 요금이 정율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
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제3항 :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 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현황(각 시·도지사 승인)

가. 서울특별시(산업57244-1585호)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부담)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토지경계까지의 공급관 및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관·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한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나. 부산광역시(공업57253-45호) 공급규정 제15조(공사비 부담)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본관·공급관(사용자 공급관 제외)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타 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보수·교체·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출 등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가스사용자시설의 설치·교체·개조 및 철거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의 도시가스사용시설 시공비 기준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 문제점 및 대책

도시가스공급관의 일부인 토지경계까지의 인입배관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시 확대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 공사비 부담에서 각시·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수요자 및 시공자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급조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공사비의 부담에서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사용자 소유의 토

지경계선에 이르는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재산이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전국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부산광역시 공급규정 참고).

◆ 도시가스시설 상주시공감리대상 완화

▶ 관련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 등)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제23조(시공감리·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제4항 제1호 상주시공감리대상의 나목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 문제점 및 대책

1998년 12월 10일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사용자 공급관의 감리제도가 일반시공감리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상주시공감리로 강화되어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있어 일반시공감리 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

◆ 배관용 탄소강관(KSD3507) 도시가스 배관사용

도시가스 안전관리통합고시 중 「배관재료기준」에서 지난 1999년 7월 1일 이전 사용하여 오던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새로운 배관재료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D 3631)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서 이에 대한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배관용 탄소강관(KSD 2507)을 새로운 재료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개정된 원인이 1996년 11월경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배관내압시험 중 파열사고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지적된 바, 이는 배관 재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배관 원자재인 철판제조 공정시 재료의 혼합불량에 따른 품질관리상의 문제이며 또한 배관제조 공정시 용접물량 등에 따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도를 개정하기 전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 파열사고는 사용압력이 중압에 해당되므로 사용압력이 저압인 도시가스시설은 종전 사용하던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배관용 탄소강관의 재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전국 도시가스시설 최초공사부터 현재까지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전국에 기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피팅류(엘보우, 티, 소켓 등)는 배관시공과 관련된 부속품이므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부속품의 생산제품이 없어 종전 사용하던 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되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개 제조업체의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공급체제는 사실상 독점공급체제로서 생산과 공급 특권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들 3개 업체가 담합해 가격이나 물량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의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의 공사원가 상승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공사지연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므로 배관용 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